

의안번호	2212772
의 퇴 인	서삼석 의원
회 답 일	2026. 3. 11.
추 계 번호	25B4977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3항 (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)	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, 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 <신설>1. 해양생태계,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의 현황 및 특성 <신설>2. 해양보호생물,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 및 외래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<신설>3. 해양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 <신설>4.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등의 현황 <신설>5. 연안습지 및 해안사구의 생태계 현황, 오염 현황 및 사회적·경제적 현황 <신설>6.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제3항 (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)	·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범위 확대(안 제10조제3항)

-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(해양생태계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,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조사·관찰,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「습지보전법」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

는 조사를 말함)를 실시하도록 하면서,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¹⁾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○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기본조사와 중점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

－ 기본조사: 우리나라를 2개 권역*으로 구분하여 2년 주기로 매년 1개 권역을 연 1~2회 조사

* (홀수해) 서해·남해서부권역(603정점) / (짝수해) 동해·남해동부·제주권역(377정점)

－ 중점조사: 중요 갯벌(12개소), 하구역·내만·연안용승해역(7개소, 54개 정점), 아열대화 해역(7개소, 22개 정점), 주요 철새 도래지(31개소) 등 해양생태학적 중요해역을 매년 1~4회 조사

[표 1]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실시 현황

총 1,113정점											
기본조사(980정점)					중점조사(133정점)						
구 분		홀수해 (603정점)		짝수해 (377정점)		구 분		홀수해 (129정점)		짝수해 (131정점)	
갯벌	퇴적/대형저서	(387)	516	(198)	264	중요 갯벌*		2개소		4개소	
	염생식물	(129)		(66)							
연안	부유/저서	(56)	76	(54)	88	주요 내만 ·하구 등	부유/저서 유영	42		54	
	유영	(20)		(34)				12			
암반		11		25		아열대화 관찰 해역		22			
						바닷새		31			
						근해**		20			

* 중요 갯벌 조사 정점은 매년 변경

** 근해생태조사(20개 정점) 자료는 국립수산물과학원 정선해양 관측자료 활용
자료: 해양수산부

[표 2]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관련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예산	6,596	6,824	6,824	6,824	6,824	6,824

자료: 해양수산부

1) 제5조(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(이하 "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"라 한다)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양생태계,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의 현황 및 특성
2. 해양보호생물,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 및 외래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
3. 해양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
4.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등의 현황
5. 연안습지의 생태계 현황, 오염 현황 및 사회적·경제적 현황
6.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-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조사 내용에 해안사구의 생태계 현황, 오염 현황 및 사회적·경제적 현황을 추가하는 것으로, 조사 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- 그러나 개정안은 해안사구에 대한 조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, 현 시점에서는 해안사구 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－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안사구 189개 중 법정보호구역(해양보호구역, 국립공원 등)을 제외한 156개의 해안사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stone@assembly.go.kr